

국 민 안 전 처

주 의 요 구

제 목 ○○○지구 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고성군

내 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근거하여 2015년 국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고성군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표 1]과 같이 시행하였다.

[표 1] ○○○지구 급경사지 사업 추진 현황

공사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도금 업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529,436	264,718	264,718	2015.11.23. ~2016.7.16	○○○○(주) ○○○	

자료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르면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요령’에 따르면 발주(사업)부서는 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고성군은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일부분인 비탈면 보호공법을 추진하면서 토사 비탈면으로 우기 시 지속적인 표층 유실이 발생이 우려되고, 급경사지 지역으로 표층 유실로 식생이 불량하다는 이유를 들어 SH 친환경 비탈면 녹화토 공법을 ○○○○○(주)과 146,217천원에 특허사용 계약을 체결(2015. 10. 21.)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특허공법을 선정하면서 사전에 계약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였고

또한, 식물에 의한 비탈면 보호 공법의 종류는 다양¹⁰⁹⁾하여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법별 사업비 비교결과 [표 2]와 같이 공사비가 저렴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공법이 있는데도 특정업체와 경쟁 입찰 없이 100% 투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17,000천원¹¹⁰⁾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였고,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른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지구 급경사지 비탈면 보호공법 사업비 비교

구분	잔디식재	씨딩	자연표토 복원공법	SH 비탈 녹화토공법	암절개면 보호공법	법면배토 습식공법
㎡ 당 단가(원)	1,810	1,528	3,058	3,059	2,875	2,965
사업비(천원)	27,600	27,300	108,643	97,050	143,608	59,794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향후 유사한 사례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주

109) 실시설계 과정에서 잔디식재, 씨딩(벚꽃거적, 코아넷), 자연표토 복원공법, 암절개면보호식재공법, 법면배토습식공법이 비교됨

110) 광산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공사 낙찰률 87.754% 대비 차액

시기 바랍니다.